

1.약관명: 금리우대추가약정서(주택도시기금: 가계용)

2.시행일: 2025.12.01

3.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: 미적용

금리우대추가약정서 약관 일부개정 전후 대비표

개정 전		개정 후		비 고
금리우대 추가약정서 (주택도시기금대출: 가계용)		금리우대 추가약정서 (주택도시기금대출: 가계용)		금리적용기간 명확화
제1조 금리우대적용		제1조 금리우대적용 등		
□ 기본		□ 기본		
추가금리우대※중복적용가능	구입자금	추가금리우대※중복적용가능	구입자금	
	□ 청약(종합)저축 가입자 (□ 본인 □ 배우자) () %p * 대출실행일로부터 최대 5년간 적용		□ 청약(종합)저축 가입자 (□ 본인 □ 배우자) () %p * 대출실행일로부터 최대 5년간 적용	
	□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() %p *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규접수하는 건에 대해 대출실행일로부터 5년간 한시적 적용		□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() %p *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규접수하는 건에 대해 대출실행일로부터 5년간 한시적 적용	
	□ 지방 준공후 미분양주택 가구 () %p * <u>대출실행일로부터 5년간 적용</u>		□ 지방 준공후 미분양주택 가구 () %p * 적용일로부터 5년간 적용	
	□ 대출신청 금액이 대출심사를 통해 산정한 금액의 30% 이하인 경우 () %p * 대출실행일로부터 5년간 적용		□ 대출신청 금액이 대출심사를 통해 산정한 금액의 30% 이하인 경우 () %p * 대출실행일로부터 5년간 적용	
□ 대출실행일 기준 1년 경과 후부터 중도상환한 금액이 대출원금의 40% 이상인 경우 () %p		□ 대출실행일 기준 1년 경과 후부터 중도상환한 금액이 대출원금의 40% 이상인 경우 () %p		

개정 전		개정 후	비 고
□ 신혼가구 (단, 구입자금은 주택보유(세대주 및 세대원전원) 이력이 없는 신혼가구)		□ 신혼가구 (단, 구입자금은 주택보유(세대주 및 세대원전원) 이력이 없는 신혼가구)	금리적용기간 명확화
추가금리우대※ 중복 적용 가능	구입자금 □ 청약(종합)저축 가입자 (□ 본인 □ 배우자) () %p * 대출실행일로부터 최대 5년간 적용 □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() %p *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규접수하는 건에 대해 대출실행일로부터 5년간 한시적 적용 □ 지방 준공후 미분양주택 가구 () %p * 대출실행일로부터 5년간 적용 □ 대출신청 금액이 대출심사를 통해 산정한 금액의 30% 이하인 경우 () %p * 대출실행일로부터 5년간 적용 □ 대출실행일 기준 1년 경과 후부터 중도상환한 금액이 대출원금의 40% 이상인 경우 () %p	구입자금 □ 청약(종합)저축 가입자 (□ 본인 □ 배우자) () %p * 대출실행일로부터 최대 5년간 적용 □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() %p *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규접수하는 건에 대해 대출실행일로부터 5년간 한시적 적용 □ 지방 준공후 미분양주택 가구 () %p * 적용일로부터 5년간 적용 □ 대출신청 금액이 대출심사를 통해 산정한 금액의 30% 이하인 경우 () %p * 대출실행일로부터 5년간 적용 □ 대출실행일 기준 1년 경과 후부터 중도상환한 금액이 대출원금의 40% 이상인 경우 () %p	